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 12. 17. 김영해의원외 6
- 나. 회부일자 : 2004. 12. 21(화)
- 다. 상정일자 : 2004. 12. 23(목)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12.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우강호 의원)

-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작물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 임업의 경영을 위함.
- 나. 주요골자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 규정.(안 제3조)
 - 농가의 피해농지 면적기준을 규정.(안 제4조)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를 규정.(안 제7조)
 - 피해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피해금액 산정에 따른 피해보상의 내용을 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가.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성격을 지닌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근거하여 날로 증가하는 농작물등의 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의 규정을 정하여 농업, 임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는 조례로서

나.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시설 설치의 지원과 피해농작물등의 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과 함께
-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 본 조례는 내용상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상위법령의 성격을 지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등의 법령이 2005년 추진예정에 있고 향후 본 조례안과 유사한 법령제정이 예상됩니다.

라. 그러나 정부부처간 협의의 절차를 거쳐 수립될 조례제정 지침의 마련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농업, 임업인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운영이 되더라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